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이미 폐지·휴지된 경우 및 최근 2년 연속 연평균 정원 충족률이 2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법인의 대규모 해산에 따른 보육 공백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신설하여 법인 해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표준화된 서류 양식을 규정하고,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반환을 위해 감가상각 내용연수 40년 및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환산액 산정 방법을 명시하며,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이미 폐지·휴지된 경우 및 최근 2년 연속 연평균 정원 충족률이 3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보육 공백 우려를 예방하는 한편,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퇴로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26. ~ 2026. 2. 4.) 완료

3) 재입법예고(2026. 3. 6. ~ 2026. 4. 15.) 예정

4) 행정규제 : 협의 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휴지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연평균 정원 충족률이 최근 2년 연속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법인의 해산이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산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산 사유

2. 해산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목록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 잔여재산 귀속 법인의 정관(법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법인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금 반환 의무자 및 보조금 반환 계획: 별지 제18호의6서식

⑤ 법 제43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산한다.

1. 반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신축 및 증축·개축 보조금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 반환 대상액은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해산인가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보조금에서 빼고 계산한다.

제36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

원) ① 법 제43조의4제1항에서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폐지·휴지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연평균 정원 충족률이 최근 2년 연속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가 지역 어린이집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를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새로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의4 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6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 제36조의2 개정 규정은 2033년 5월 11일까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교부된 증축·개축 보조금의 반환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36조의2제5항제1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6조의2(어린이집의 설치·운영</u> <u>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u> <u>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u> <u>관한 특례) ① 법 제43조의3제1항</u> <u>에서 “영유아의 수가 크게 감소</u> <u>하는 등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u> <u>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u> <u>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u> <u>린이집이 폐지·휴지된 경우</u> <u>2.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u> <u>린이집의 연평균 정원 충족률</u> <u>이 최근 2년 연속 20퍼센트 이</u> <u>하인 경우</u> <u>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u> <u>하는 사유로서 목적사업 수행</u> <u>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u> <u>사가 인정하는 경우</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u> <u>사는 법인의 해산이 해당 지역</u> <u>의 어린이집 수급에 중대한 영</u> <u>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u> <u>해산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u> <u>③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u> <u>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u>

인의 해산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산 사유

2. 해산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④ 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목록

2. 재산감정평가내역

3. 잔여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4. 잔여재산 귀속 법인의 정관 (법 제43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법인으로 잔여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금 반환 의무자 및 보조금 반환 계획: 별지 제18호의6서식

⑤ 법 제43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등은 다음

<신 설>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산한다.

1. 반환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신축 및 증축·개축 보조금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여 정
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 반환 대상액은 재산을 취득
한 날부터 해산인가신청서 제
출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1호
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감가
상각액을 보조금에서 빼고 계
산한다.

제36조의3(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 ① 법 제43조의4제1
항에서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
로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
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
린이집이 폐지·휴지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
린이집의 연평균 정원 충족률
이 최근 2년 연속 30퍼센트 이
하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
하는 사유로서 목적사업 수행
이 곤란하다고 관할 시·도지
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가 지역 어린이집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목적사업 변경 또는 추가를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목적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라 새로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해산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단체명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어린이집 개요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생년월일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 사유 및 증빙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위와 같이 해산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결의 증명 서류(이사회 회의록)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신고서 또는 폐지 증빙서류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금반환계획서	수수료 없음
------	--	-----------

잔여재산처분계획서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잔여재산	총액 금 000,000,000원(감정평가액 기준)			
	목록 및 감정평가 현황			
	구분	재산 종류(목록)	수량 및 면적	감정평가액(원)
잔여재산 처분 계획	처분 방법(복수 선택 가능) [] 특정인에게 귀속 [] 유사한 목적 법인への 출연			
	특정인에게 귀속			
	귀속될 자(성명)			
	귀속 사유			
	귀속 재산	금 000,000,000원(감정평가액 기준)		
	귀속 예정 일정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회복지법인への 출연			
	출연 대상 법인 명칭			
	목적의 유사성			
	귀속 재산	금 000,000,000원(감정평가액 기준)		
	귀속 예정 일정			
	첨부 서류	출연받을 법인의 설립 허가서 및 정관 사본		

보조금반환계획서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본재산	취득 재산명	교부액				교부일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반환 대상액	순번	취득 재산명	보조금 교부액(①)	내용연수	감가상각액 (②)	반환 대상액 (①-②)	비고
반환 예정일							

위 보조금반환계획서를 제출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3제4항 및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반환 의무자(대표자 등) (서명 또는 인)